

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- 13호

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. 3. 13.

임실군의회 의장



임실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1. 제 안 이 유

임실군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여 과학영농의 실천과 소득증대를 위한 임실군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2. 주 요 내 용

- 가. 목적, 설치, 조직에 관한 규정 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나.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 (안 제4조)
- 다. 입학 자격, 교수 위촉에 관한 규정 (안 제5조 ~ 안 제6조)
- 라. 수업연한 및, 결석 등, 졸업에 관한 규정 (안 제7조 ~ 안 제9조)
- 마.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 (안 제10조)
- 바.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 (안 제11조)

3. 참 고 자 료

- 가. 관련법령 : 『농촌진흥법』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 등 : 집행부 의견조회

라. 입법예고 : 2024. 3. 13. ~ 3. 18.(5 일간)

마. 기 타

1) 제정 조례안

2)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임실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임실군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여 과학영농의 실천과 소득증대를 위한 임실군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임실군 농업인대학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은 임실군 농업기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내에 설치한다.

제3조(조직 등) ① 대학에는 학장, 부학장, 교학부장, 학과장을 각 1명씩 두며,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등을 둘 수 있다.

② 학장은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로 하고 교육과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, 학장을 보좌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·관리한다.

④ 교학부장은 농업인대학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,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 및 지도를 담당한다.

⑤ 학과장은 각 전공 교육과정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) 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, 위원은 농업축산과장, 농촌활력과장, 농촌지원과장,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농업인대학 업

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3. 입학, 수료, 제적 등 학생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입학자격 및 등록) ① 입학자격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을 희망하는 군민으로 한다.

② 입학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

③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등록신청서
2.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제6조(교수 위촉) ① 학장은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

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
2. 농촌진흥기관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
3.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7조(수업연한 등) ①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정에 따라 교육기간 등을 협의·조정할 수 있다.

② 수업일수는 연간 20일 내외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하며, 농번기에는 휴강할 수 있다.

제8조(결석 등) ①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3회 지각 및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1일 결석으로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.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령에 의한 소집·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
2.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하거나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가하여 관련부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
3.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
4. 병원 입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
5. 본인 및 직계존비속 애경사 시

제9조(졸업) ①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100분의 70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

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 없이 미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출석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급처리 한다.

③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 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예산지원 등) ①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.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대학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『농촌진흥법』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·농업인·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·보급, 농촌지도,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교육훈련사업”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

나. 농업인,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

다.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

라.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제19조(교육훈련사업의 실시)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0조(교육훈련과정 등 연구·개선)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·개선하여야 한다.

임실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